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1062호 2014.12.15.(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17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17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3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1390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1395호 견인대행업 공개모집 재공고 ----- 16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 17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12. 1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북항로 110외 1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12. 12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4-12-12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 서구 원창동 390-30	북항로 110	2009-08-28	인천의 대표적 항구인 북항을 지나는 도로	
2	인천 서구 공촌동 301-1	경명대로659번길 20	2009-07-01	경명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5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 서구 경서동 249-1	경명대로 465	2009-06-30	계양산과 천마산사이 징명이고개를 통과하는 도로구간으로 징명이고개의 한자표기말인 <경명>명칭에서 부여	
4	인천 서구 검암동 671-2	도요지로 216-1	2009-08-28	도로인근에 녹청자 도요지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	
5	인천 서구 왕길동 670-12	완정로165번길 21	2008-12-13	완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 서구 오류동 1647-9	보듬2로 11	2012-10-25	보듬로에서 두번째 분기되는 도로	
7	인천 서구 당하동 1086-2	서곶로 797	2009-09-22	서쪽으러 길게 뻗은 해안이라는 뜻으로 해안을 매립할 때 서곶이라는 이름을 남기고자 명명	
8	인천 서구 오류동 1626-5	보듬5로 6	2012-10-25	보듬로에서 다섯번째 분기되는 도로	
9	인천 서구 오류동 1655-1	검단로114번길 21	2012-10-25	검단로 시작지점부터 1,1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 서구 오류동 1621-11	보듬로 89	2012-10-25	"가슴에 붙도록 안다" 라는 순우리말에서 착안	
11	인천 서구 오류동 1655-2	검단로114번길 17	2012-10-25	검단로 시작지점부터 1,1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 서구 당하동 61-6, 61-5	원당대로820번길 70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2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 178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4. 12. 1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인천 서구 연희동 166-10	중봉대로722번길 80	2014-11-26	건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 일부개정(2014. 9. 2)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 정상 참작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국정과제 등 관련업무처리의 적극성”을 추가 명시함. (안 제2조, 안 제7조)
- 수사기관 결정 통보와 관계없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기준에 따라 의결을 요구하도록 함(안 제2조의2)
- 「공직자 윤리법」 제8조의2 제1항제4호에 따라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위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비위는 공직에 의한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함(안 제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4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560-4102, Fax 560-2710)에게 서면 또는 전화(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공적”을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처리의 적극성”으로 하고 “별표 4의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 기준 및 별표 1의3의 징계 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를 “별표 1의3의 징계 부가금 부가기준 및 별표 4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을 참작하여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한다.”로 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내부종결처리”를 “내부종결처리. 다만,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적용”으로 하고, 제2호 중 “별표 1 적용”을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적용”으로 하며, 제3호 중 “별표 1 적용”을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적용”으로 한다.

제4호제1항 중 “성희롱에”를 “성희롱,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위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비위에”로 하고, 제2호 중 “지도사와 기능직 공무원은”을 “지도사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징계보다 위의 징계로”를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하고, 제2호 중 “승진임용 제한기간에”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이하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의”를 “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이하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구체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를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

를 적어야 한다.”로 하고, “청렴의무 위반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 4와 별표 1의2를 각각 적용한다.”를 “음주운전과 청렴의 의무 위반 관련 사건은 별표 1의2와 별표 4를 각각 적용한다.”로 하며 제2항 중 “관련도와”를 “관련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2, 제4조제1항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유 형 별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견책-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감봉-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파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직-파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해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해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u>공적</u>, <u>뇌우치는 정도</u>,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u>별표 4의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 기준 및 별표 1의3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u></p> <p>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p> <p>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 <u>내부 종결처리</u></p>	<p>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 ----- ----- <u>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처리의 적극성,</u> ----- -----<u>별표 1의3의 징계부가금 부가기준 및 별표 4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 기준을 참작하여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한다.</u></p> <p>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 ----- ----- ----- -----</p> <p>1. ----- <u>내부 종결처리. 다만, 「지방공무원법」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적용</u></p>

현행	개정안
<p>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p> <p>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의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u>지도사와 기능직 공무원</u>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기관장을 포함한다), 광역시장,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p> <p>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p> <p>4. 청백봉사상을 받은 공적</p> <p>제5조(징계의 가중) ①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u>징계보다 위의 징계로</u> 의결할 수 있다.</p>	<p>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위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비위에</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p> <p>-----</p> <p>----- <u>지도사는</u></p> <p>-----</p> <p>-----</p> <p>3.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p>제5조(징계의 가중) ① -----</p> <p>-----</p> <p>-----</p> <p>----- <u>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u> -----</p> <p>-----</p>

현행	개정안
<p>②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u>승진임용 제한기간에</u> 발생한 비위로 다시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p> <p>제6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인사위원회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이하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p> <p>제7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의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p>	<p>② ----- ----- -----<u>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u>----- ----- ----- ----- ----- -----</p> <p>제6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 ----- -----<u>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이하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의</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① ----- ----- ----- -----</p>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p>관계법령</p>	<p>□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제4조(징계의 감경) ○제7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요령) <p>□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p style="text-align: center;">“내용은 별지 작성”</p>
<p>관련법규 정비대상</p>	<p style="text-align: center;">“해당사항 없음”</p>
<p>특이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해당사항 없음”</p>

관련법령 발췌사항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누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3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2011.11.1., 2014.9.2.>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와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11.11.1., 2014.9.2.>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

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와 기능직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제7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요령)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 2에 따른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 관련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2014.9.2.>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다만, 「국가공무원법」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적용한다.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결정: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적용

[전문개정 2014.7.29]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1395호

견인대행업 공개모집 재공고

도로교통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위반 차량 견인대행 법인등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재공고 합니다.

2014년 12 월 10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명 : 주정차위반차량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 대행업

2. 사업내용

가. 우리 구가 지정한 구역내에서 단속공무원이 적발한 주·정차위반 차량을 견인보관소까지 견인이동, 보관 및 반환하는 업무의 대행

나. 대행업체가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이 정한 견인료 및 보관료를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징수하여 그 대행법인의 수입으로 함으로써 그 수입을 자체 소요비용으로 충당하는 조건임.

3. 대행(계약)기간 : 2015. 01월중 ~ 2016. 12. 31

4. 지정법인등 수 : 1개 업체(법인·단체 또는 개인)

5. 지정방법 : 우리 구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중에서 선정위원회 심사에 의하여 결정

6. 공고기간 : 2014. 12. 9 ~ 12. 30

7. 신청기간 및 장소 : 2015. 1. 2, 2015. 1. 5.(2일간) 18:00한 (서구청 주차관리과)

8.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서구 관내 4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사무실, 휴게실) 확보.

단,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을 겸용할 수 없음

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5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보험 등에 가입하고 1대 이상의 견인차 (언더리프터를 장착한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보유

- 다. 견인차량 운전원 1명 이상, 견인차량보관소의 사무원 2명 이상, 경비원 1명 이상
필수인력 확보하고 견인보관소(사무실)와 견인자동차간의 통신장비 확보
- 라. 그 밖에 차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 확보

9. 신청서류(소정양식 등은 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가. 견인대행법인 등 지정신청서 1부
- 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자체 업무규정 1부
- 다. 견인대행 사업계획서 1부
- 라. 견인대행업 자격요건 (시설·장비·인력) 구비 승락서 1부
- 마. 견인보관소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 본인소유시 토지등기부등본 1, 토지대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타인소유시 토지등기부등본 1, 토지대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2년 이상 임대차계약서 1,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임대차계약용) 1.
- 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및 단체에 한함) 1부
- 사. 임원 및 종사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법인 및 단체에 한함) 1부
- 아. 인감증명서 1부
- 자. 화물자동차(견인)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 차. 기타 견인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서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10. 사업설명회 개최

- 가. 개최일시 및 장소 : 2014. 12. 31(수) 11:00 (서구청 주차단속팀 회의실)
- 나. 설명내용 : 대행업자 자격요건 및 주요대행업무 설명 등

11. 대행업체 심사·선정

- 가. 심사월일 : 2015. 1. 13(화) 14:00 【예정】
- 나. 선정기준 : 주차시설 및 인력, 장비 확보관련 등 전반, 재정적 부담능력 등
- 다. 선정방법 : 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라. 결과발표 : 2015. 1월중 (신청자에게 개별통지)

12. 기타 유의사항

- 가. 등록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지정을 취소함
- 다.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관리과 주차관리팀(☎560-5940)